##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4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안도걸·강준현·임호선

강유정 · 위성곤 · 정일영

박홍배 • 맹성규 • 정준호

이기헌 • 박희승 • 조인철

김영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 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 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근로자 및 사업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은 복지후생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상황임. 추가로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증진되면 건강보험료 지출이 줄어드는 등 국가의 공공지출이 줄어들므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근로자 및 사업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 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에도"를 "제5항에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1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의"를 "제10항까지의"로 한다.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에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연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이용료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골프장은 제
	외한다)에 해당 거주자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
	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
	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u>액에서 공제한다.</u>
<u>④·⑤</u> (생 략)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u>⑥</u> 제1항부터 <u>제4항까지의</u> 규	<u>⑦</u> <u>제5항까지의</u>
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u>⑦</u> (생 략)	<u>⑧</u> (현행 제7항과 같음)
<u>⑧</u>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u> ⑨</u> 제5항에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 등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하게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 2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

<u> 10</u>
1
제7항

우: 연 13만원

- 2. (생략)
- ① 제1항부터 <u>제9항까지의</u>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 제"라 한다.
- ⑪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① <u>제10항까지의</u>
,
◎ (현행 제11항과 같음)